

의안번호	2214310
의 퇴 인	박홍근 의원
회 답 일	2026.01.13.
추 계 번호	25C6293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③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224억 3,300만원, 2031년 240억 8,400만원 등 향후 5년간 1,161억 2,300만원(연평균 232억 2,5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33	-	-	-	-	33	6.6
센터 운영(안 제8조)	22,250	22,695	23,149	23,612	24,084	115,790	23,158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150	-	-	150	-	300	60
합계	22,433	22,695	23,149	23,762	24,084	116,123	23,225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맞춤형교육 담당교원)	(제1항)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맞춤형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맞춤형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8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안 제9조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 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 동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추계가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 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7조 (맞춤형교육 담당교원)	×	· 제정안은 학교장이 맞춤형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관련 연수 이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 제정안 시행 시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연수가 이루어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수행 중인 사업과 취지가 중복되어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
4	안 제8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	
5	안 제9조 (실태조사)	○	
6	안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기관·단체의 수 및 지원 내용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②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안 제8조) ③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8조)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서울특별시는 '20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2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25년 12억 5,800만 원을 지원함
 -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다수 제정되었으나, 별도 사업 편성은 미미한 상태임
 - * [참고자료]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현황
 - (안 제6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는 '24년 최초로 이루어져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함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3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하며, 관련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

[표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교육부	2021	30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2021	36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3]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33	-	-	-	-	33	6.6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준용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22억 5,000만원, 2031년 240억 8,400만원 등 향후 5년간 1,157억 9,000만원(연평균 231억 5,8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센터가 설치되어 총 17개소가 신규 운영된다고 가정
 - 서울특별시는 기존에 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센터가 설치·운영된다고 가정

- 서울특별시는 센터 운영에 '25년 12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산출
 - －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나, 서울특별시 외에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음
 - － 향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확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표 4] 센터 설치·운영 비용 추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센터 운영비(A, 백만원)	1,309	1,335	1,362	1,389	1,417	6,811	1,362
센터 수(B, 개소)	17	17	17	17	17	—	—
추가재정소요(C=A×B, 억원)	222	227	231	236	241	1,158	232

주: 1. 서울특별시는 기존에 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2.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시·도별 센터 규모 및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억원(연평균 6,000만원)으로 추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년 9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 참고로, 조사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 경계선지능인 인원, 위험군 비율, 학습·직업 현황 등임
 - 제정안의 조문을 참조하여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표 5] 실태조사 실시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150	—	—	150	—	300	60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서울	○	○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21)
부산	○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12)
대구	○	○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4)
인천	○	○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6)
광주	○	○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4)
대전	○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4)
울산	○	○	울주군, 동구, 북구, 중구(4)
세종	○	○	
경기	○	○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연천군(25)
강원	○	○	강릉시, 원주시, 삼척시, 춘천시, 인제군, 화천군(6)
충북	○	○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음성군(5)
충남	○	○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9)
전북	○	○	군산시, 전주시(2)
전남	×	×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5)
경북	○	○	안동시, 예천군(2)
경남	×	○	양산시, 진주시, 함안군(3)
제주	○	○	
합계	15	14	112

주: 1. '26년 1월 기준 자료임

2.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를 포함한 것임

3. 교육청의 경우,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 ○ 표시

자료: 교육부 자료¹⁾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교육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2024), 17p